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Brief*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에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가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을 분기별로 정리해서
*Brief*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ontents

-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 II. 주요 규제 동향
- III. 국내외 뉴스
- IV. FAQ
- V. 주요 행사

본 자료는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홈페이지에서 원문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으며 본문에서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자료 다운로드 또는 해당 사이트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 Deloitte Korea (클릭하면 홈페이지로 이동)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12월, Deloitte Global Boardroom Program

이사회 프론티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

- 조직의 다양한 이해관계자(고객, 직원, 비즈니스 파트너, 투자자 및 커뮤니티) 간의 신뢰를 구축하고 보호하는 데 있어 리더들은 우선순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 딜로이트 이사회 프로그램에서 30여 개국의 이사회 멤버 및 최고경영진 1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 따르면 대부분의 조직(67%)이 지난 18개월 동안 코로나19와 관련된 문제 대응, 위기 관리, 재무건전성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나타남
- 2022년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난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을 위한 중점영역인 재무건전성, 고객 경험, 사이버 보안은 고객 신뢰와 충성도의 중요성을 보여줌
- 그러나 장기적인 예측은 중점영역과 우선순위에 다른 중요한 변화가 있음을 나타내며, 응답자의 61%가 향후 3년 동안 이해관계자와의 신뢰를 구축하고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서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답함
- 영국 딜로이트 시니어 파트너이자 딜로이트 글로벌 이사회 프로그램 리더인 윌리엄 투쉬(William Touche)는 이번 서베이를 통해 비즈니스 리더들이 미래에 기업이 기후 위기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와 더 많이 교류하며, 직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는 기업의 리더십에 대한 사회의 더 큰 요구와 투자자의 동향도 반영하고 있다고 이야기함

※ 본 서베이에 대한 전체 보고서는 2023년 2월 초에 발간될 예정임

다운로드

Deloitte



이사회 프론티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

이사회 프론티어: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구축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11월판

인적자본의 우선순위 지정 - 당면과제와 이사회의 역할

- 많은 기업의 이사회는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 노동자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으며, 환경, 사회 및 거버넌스(ESG) 문제에 대한 투명성과 조치의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시장 및 노동자에 대한 기대가 혁신적으로 변화됐고, 이는 다양한 인적 자본 리스크와 이사회 논의의 기회를 높이고 있음
- ESG에서 가장 많이 다루어지는 주제는 대부분의 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력 관련 문제—문화, 목적, 하이브리드 근무, 미래의 업무방식, 웰빙(well-being), 기술 격차, 자동화, 사회적 기대치의 변화와 같은 문제 뿐만 아니라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DEI)이 이사회 안건에서 점점 더 많이 등장하고 있음
-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통계 변화, 기대치 변화, 디지털 전환, 인재경쟁 심화, 승계 계획 등이 일상적인 이사회 논의의 일부가 되고 있음
- 미국 100대 고용주의 공시를 분석한 결과 인적자본에 대한 공시는 임금, 보상, 복리후생, 직업안정성, 건강 및 안전, 학습 및 교육, 고용 및 노동형태 등에서 대체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 주요 시사점
 - 일반적으로 C-레벨 경영진은 광범위한 인력 관련 문제가 전략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나, 인력 리스크에 대한 완전하고 통합된 관점이나 예방적이거나 총체적인 접근방식은 보유하지 않을 수도 있음
 - 응답 조직은 인력 리스크에 대한 명확하고 총체적인 정의가 없으며 기존의 전통적인 채널 이외의 영역에 대한 광범위한 제도적 지식이나 조정된 전문 지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 향후 3년 간 소속 조직이 인력 리스크의 광범위하고 역동적인 측면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느낀 응답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인력 리스크에 대한 경영진의 조치를 촉구하고 있음
 - 보상위원회 명칭이 인적 자본, 인적 자원, 인재 및 경영개발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음— "문화 및 보상", "인재문화 및 보상", "인재 리더십 및 보상", "인적자본 및 보상", "조직발전 및 보상"과 같은 새로운 이름을 사용함
 - 인력 리스크 측정, 모니터링 및 관리에 대한 성숙도가 높은 기업이 다양한 사업지표에서 경쟁사보다 더 나은 성과를 자체 보고할 수 있음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Deloitte Global, 2022년 11월 Deloitte Insights 편집국

2022 기후행동 점검: COP27에 앞서 기후행동에 대한 재계의 인식을 점검한다

- 전 세계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의 지정학적 위기, 치솟는 인플레이션, 세계 경제 불확실성으로 출렁이고 있으며, 각각의 사태는 기후위기에 따른 지속가능성 행동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음
- 딜로이트는 COP27을 앞두고 기업 리더들의 기후위기 인식을 조사하고 기후행동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2022 기후행동 점검 서베이를 2022년 8~9월 글로벌 기업 고위 경영진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함
- 이를 통해 기후위기와 관련해 경영진이 가장 우려하는 점, 각 기업이 취하고 있는 기후행동 그리고 정부 정책에 대한 견해와 더불어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인식과 행동간 간극 등에 대해 살펴봄
- 주요 내용 요약
 - 낙관론 우세: 응답자의 75%는 COP27에서 파리협정에 부합하는 결론이 도출될 것으로 기대했고, 87%는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행동에 투자하면 장기적으로 경제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응답함
 - 향후 1년간 '지속가능성 노력에 속도를 높일 것이다'라고 답한 응답자는 40%에 육박했으나, 인플레이션과 지정학적 사태 등 외부 요인들이 기업의 일부 기후 및 지속가능성 전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표출됨
 - 정부 지원에 대해 엇갈린 의견으로, 응답자의 55%는 새로운 정부 규제와 정책을 지지했으며, 정부가 현행 규제와 정책 이행을 우선시하기를 바라는 응답자는 27%에 그침
 - 대부분 응답자들은 기후변화 위기를 완화시키거나 이에 적응하기 위한 전략을 시행한다고 답하여, 완화와 적응 전략을 수행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69% 및 68%에 달했으나, 일부 산업은 뒤처지는 양상을 보임
 - 기후변화 관련 가장 크게 우려하는 사안으로는 기후 안보 위험을 꼽았으며, 위장환경주의(Greenwashing)와 공정전환(Just Transition) 또한 전 세계적 관심이 집중되는 사안으로 꼽힘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On the Board's Agenda 10월판

공급망 전략: 전통적인 기업 균형 변화

➤ 오늘날의 린(lean) 경영* 및 JIT(Just In Time, 적시생산시스템) 경영 접근법 시대에는 많은 기업이 비용 및 효율성에 집중하는 공급망 전략을 채택함

*구매, 생산, 재고관리, 판매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서 손실요소를 줄여 생산성 개선을 추구하는 차세대 경영기법

➤ 최저 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공급망 공식을 통해 주요 고객에게 합의된 가격으로 적시에 납품이 가능하다면, 생산설비와 공급업체는 거의 모든 지역에 위치할 수 있음

➤ 파급이 크고 발생 빈도가 낮은(low-probability, high-impact) 사건들이 발생하는 최근 몇 년, 지역 및 국경을 폐쇄하고 인프라를 제약하는 글로벌 팬데믹 및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전세계 공급망 변화에 중요한 동인이 되었음

➤ 이런 폐쇄 및 갈등으로 공급망 운영에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기업과 최종 소비자 시장에 가까이 위치하거나, 안정적이고 신뢰할 만한 무역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에 위치한 공급업체로부터 제품을 조달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고려하고 있음

➤ 지역화된 소싱(sourcing) 접근법은 장거리 운송 등 관련 리스크를 감소하고 공급망 탄력성을 촉진할 수 있음

➤ 목차:

- 의사결정 사항
- 디지털 솔루션 해법
- 공급망에 디지털 솔루션 활용
- 인문학과 과학의 결합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9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교육 및 평가

- 효과적인 감독을 제공하기 위해 이사회는 빠르게 진화하는 거버넌스 환경을 파악하고 정기적으로 성과를 평가해야 함
- 이사회 교육과 관련하여 모든 이사회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단일 접근법은 없으며, 교육방식과 내용, 전달방법은 이사회와 회사의 사업 및 기타 관련 요소에 맞게 조정되어야 하고, 이사회 평가(범위, 방법론, 내용 포함) 또한 회사의 실정과 상황에 맞게 조정되어야 함
- 본 보고서는 이사회가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과 이사회 평가 관행에 접근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2022년 7월 기업거버넌스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가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에서 이사회 및 위원회 교육 주제, 이사회 평가절차와 관련 공시를 다룬 조사 결과를 제시함

➢ 주요 조사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 및 기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로, 다양한규모와 업종의 154개 상장기업을 대표함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y):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기업 법무 및 주주관계 업무를 총괄 하는 고위직
- 대형 상장법인의 15%,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 교육을 위해 정기 이사회 회의 이외의 시간을 할애한다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약 40%, 중형 상장법인의 약 35%는 이사회 성과 평가에 동료/상호 평가 및/혹은 자가평가가 포함된다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69%, 중형 상장법인의 37%는 이사회 평가 절차의 일부로 인터뷰를 활용한다고 응답
- 중형 상장법인의 45%, 대형 상장법인의 65%는 이사회 의장이 평가 주체라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6%, 중형 상장법인의 69%는 전체 이사회 및 위원회 성과를 평가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사회가 매우 효과적인 평가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응답
- 대형 상장법인의 78%, 중형 상장법인의 71%는 이사회 평가 과정과 방법론을 공개적으로 공시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6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내 위원회

- ESG의 범주 하에 기업의 효과적 관리가 기대되는 이슈들이 점점 진화하고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사회는 감독 역할의 의미와 감독 효과를 유지·향상시키는 방법을 고려중임
- 이를 위해 이사회는 위원회 구조와 관행을 검토하여 이사회의 확장 및 변화되는 책임과 우선순위의 적정성, 신규 위원회 설치, 위원회 규정 개정, 이사회와 위원회 전체에 걸친 감독 위임의 재할당 또는 회의형식 변경이 필요한지 등의 여부에 대한 결정을 고려해야 함
- 본 보고서는 2022년 5월, 180여개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 거버넌스 협회(Society for Corporate Governance)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서베이의 결과를 통해 이사회 위원회 구조, 구성 및 지난 1년간의 변화를 파악함
- 서베이 주요 결과
 - 응답자들은 주로 코퍼레이트 세크리터리(corporate secretaries)*, 고문변호사와 사내 거버넌스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규모와 업종의 상장법인을 대표함
* 미국, 영국 등의 기업에서 기업 법무 및 주주관계 업무를 총괄하는 고위직
 - 응답자의 13%만이 신규 위원회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것을 고려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신규 위원회를 추가적으로 설치한 경우는 정보기술위원회가 가장 많았음
 - 응답자의 55%는 하나 이상의 위원회에 대한 이사회의 감독 책임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의 68%는 유기적으로 발생한 이사회 구성의 변화를 보고했고, 전체 응답자의 30%는 유기적 변화 외에도 위원회의 담당 책임영역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갖춘 한 명 이상의 신규 이사를 확보했거나 물색중인 것으로 나타남
 - 정치기부금, 주주제안 및 주주활동에 대한 일차적인 감독 책임은 추천위원회 및 거버넌스위원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됨
 - 대형 상장법인의 55%는 일반적으로 위원회가 동시에 회의를 개최하지 않으나, 중형 상장법인의 78%는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남
 - 응답자 45%는 신규 선임된 위원을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됨
 - 대형 상장법인의 39%와 중형 상장법인의 27%는 이사회가 위원회 위원장을 교체하는 비의무적 정책이나 관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2년 3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초심으로 돌아가기: 이사회 회의

- ▶ 팬데믹으로 인해 방역 및 안전 상의 문제로 이동과 대면 모임이 제한되어 많은 기업들의 핵심 경영 요소에 변화가 있었음
- ▶ 이런 공간상의 제약이 초래한 상황이 예상 밖의 사건이었으나, 이는 팬데믹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기업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을 오랜 이사회 관행에 대한 효과성을 검토 및 재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
- ▶ 본 보고서는 팬데믹이 주요 이사회 회의에 유발한 영구적인 변화와 150개 이상의 상장 및 비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2월 서베이 조사 결과를 제시함
- ▶ 본 서베이 목적은 팬데믹으로 인해 이사회 회의방식(회의 빈도 및 시간), 가상 회의에 대한 접근법, 참석, 회의자료 및 안건 등 장기적인 변화를 파악하기 위함임
- ▶ 상장법인과 비상장법인 응답자의 55%가 팬데믹이 전체적인 이사회 절차 및 관행에 중간 수준의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함

다운로드



QR 코드



I. 딜로이트 전문가 보고서

딜로이트 홈페이지를 방문하시면 보고서 전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분기별 이사회 우수사례 (Board Practices Quarterly)

다양성·형평성·포용성(Diversity, equity, inclusion): One year later

- 본 보고서는 기 2020년 9월에 발행된 본 시리즈 초판에서 언급했던 주제를 재검토함으로써 구조적 인종차별 및 불평등을 둘러싼 지난 해 사건에 대한 기업과 이사회들의 진척 경과를 탐구함
- 특히 기업의 공시, 회의 안건 및 조치와 지난 1년 간 경영진, 이사회가 DEI 관련 주제에 대응하는 방법이 어떻게 변화했는지와, 이사회 채용 및 교육, 경영진 보수 등 DEI 관련 주제도 추가로 검토함
- 조사 결과는 120개 이상의 상장법인을 대표하는 기업지배구조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10월 서베이에 근거함
- 초판에서 예상했던 것과 같이 지난 1년 간 본 분야에 대한 연구 결과는 진전됐으며 행동 및 착수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사회 뿐만 아니라 기업지배구조 관행에도 지속적인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상장법인은 2020년 서베이 결과와 비교하여 이사회에 더 많은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관련 전략과 진행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보고함
- 주요 조사결과
 - 2020년 상장법인의 64%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상장법인의 88%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했다고 응답함
 - 2020년 상장법인의 12%와 비교하여 2021년에는 상장법인의 3%가 DEI 관련 정보를 이사회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3.1.5 (목) 금융감독원

감사인의 부정발견 모범사례 분석 및 감사 유의사항 안내

- ▶ 최근 경기침체로 경영진의 부정한 재무보고와 임직원의 횡령 유인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 감사현장에서 부정행위를 발견한 사례(22건)를 통해 감사 시 유의사항을 안내함
- ▶ 부정행위 발견 감사사례 분석

다운로드

구분	내용
1. 부정 주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행위자는 대부분 경영진(경영진 73%, 직원 27%)로, 내부통제를 무력화한 상태에서 권한을 보유한 경영진의 부정행위 유인·기회가 높음
2. 부정 유형 (재무제표 왜곡표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양호한 재무실적(상장폐지 회피 등)을 보이기 위한 목적: 7건 횡령사실 은폐 목적: 15건
3. 부정위험요소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부분 분석적 검토*를 통해 발견(15건, 68%)되었고, 산업 특성, 경영진 특성, 비정상적 거래, 비정상적 자금거래 등을 통해 부정위험요소 확인 * 재무데이터와 비재무데이터 간의 개연적인 관계를 분석하여 재무정보를 평가하는 것으로 추세분석, 비율분석 등도 포함됨
4. 입증감사절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정위험요소가 발견된 관련 계정과목에 대해 입증감사절차*를 수행하고, 포렌식 등 외부조사를 추가 실시(22건 중 15건) * 재무제표의 적정성에 대한 합리적인 확인을 얻기 위해 충분하고 적합한 감사증거를 얻기 위한 절차로, 금융기관 조회, 표본추출을 통한 증빙 대사 등 포함
5. 감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적정: 8건(재작성 2건 포함) / 비적정(의견거절 등): 14건

QR 코드

- ▶ 부정행위 감사 관련 유의사항

유의사항
1. 무자본 M&A 추정기업의 경우 비정상적 자금거래에 유의
2. 시장조치대상 재무기준에 해당하는 회사 감사 시 유의
3. 일시 사용 자산계정이 장기간 계상된 경우 실재성 의심
4. 특수관계자와의 자금거래가 빈번한 경우 부정위험 여부 고려
5. 회사가 속한 산업의 특성을 분석하여 부정위험요소 여부 확인

- ▶ (감사인) 회사의 회계부정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제기되는 경우 감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시 외부전문가의 조사 실시가 필요함
- ▶ (감사인 및 감사(위원회)) 이사의 직무수행 관련 부정행위 또는 중대한 법령·정관 위반사실을 발견 시 주주총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할 필요가 있음
- ▶ (회계법인) 법인차원에서 충분한 인력과 시간투입, 감사기법 개발, 내부교육 강화 등을 통해 감사역량 강화가 필요함
- ▶ (투자자) 공시자료 확인을 통해 신중한 투자 요망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9 (목)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감사보고서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핵심감사사항(KAM)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기업 특유의 상황에 대한 구체성, 감사절차 연관성 등을 평가*하여 수익인식, 자산손상 주제를 위주로 총 26건(19개사)의 '핵심감사사항(Key Audit Matter)** 기재 모범사례***'를 선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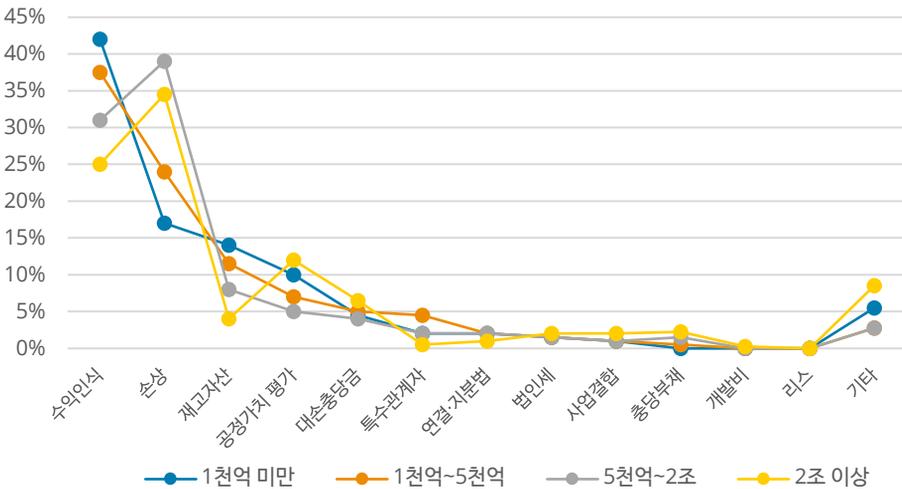
* 평가대상: '21년 연결감사보고서 중 핵심감사사항 정보량 상위 25% 전수 평가

** KAM은 감사인의 전문가적인 판단에 따른 당기 재무제표 감사에서 가장 유의적인 사항으로, 지배기구와 커뮤니케이션한 사항 중 선정

*** 한국회계학회(책임: 서울시립대 이영한 교수)에 모범사례 선정기준 개발과 평가를 의뢰

- ▶ KAM 기재 모범사례 선정 결과

- 자산규모별 KAM 기재항목 비중 ('21년 전체 상장사 기준)



- (모범사례 특징) KAM 선정 이유와 감사 대응 방법에 대해 충실히 기재함
- (선정 이유) 기업 고유의 특성, 실제 발생한 사건이나 변화, 유의적 판단이 필요한 특정 변수, 경영진이 유의적 판단을 내린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함
- (감사 방법) 일반적인 감사절차를 단순 나열한 것이 아니라, 기업 특유의 상황과 연관지어 기술하고, 검토한 감사 증거·활용한 전문가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함

- ▶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향후에도 감사인 대상 교육 및 모범사례 추가·보완 등을 실시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9 (목) 한국회계기준원,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한국회계기준원 가상자산 공동 세미나

- ▶ 한국회계기준원은 12월 28일(수)에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하여 공동세미나를 개최함
- ▶ 세미나에서는 가상자산 관련 회계이슈(한국회계기준원), 감사이슈(한국공인회계사회), 감독이슈(금융감독원)가 무엇인지 공유하고 외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 국내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논의하며 후속 대응방안을 논의함
- ▶ 주요 발표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이슈 (발표기관)	내용
1. 회계이슈 (한국회계기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가상자산 거래가 증가하고 있으나 적용할 회계기준이 모호함에 따라 회계처리의 어려움이 발생 • 회계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발행사): 가상자산 발행 시 개발사에게 어떤 '의무'가 존재하는지 식별해야 하나, 회계처리가 모호 - 보유자: 가상자산을 과거 IFRS 해석위원회에 따른 재고·무형자산 외에 특정 상황에서 다른 분류(금융자산 등)가 가능한지 여부 및 측정 방법 - 가상자산 사업자: 고객위탁 암호자산을 美 SEC 지침과 같이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산과 부채로 인식해야 하는지 여부
2. 감사이슈 (한국공인회계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황) 가상자산의 특성에서 비롯된 감사의 어려움이 발생 • 감사 가이드라인(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의 실재성과 단독 소유권을 확인하기 위한 감사절차 및 개인키에 대한 내부통제의 중요성 강조 - 제3자에게 위탁 보관하는 가상자산에 대한 감사절차(외부조회와 내부통제 인증보고서 입수 등)를 공유 - 거래소와 발행기업 관련 감사절차(가상자산 발행 기업의 수익인식 회계정책 평가 등) 소개
3. 감독이슈 (금융감독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안)의 주요 내용 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발사: 가상자산의 특성 등 주요사항, 회계정책, 개발사의 의무 및 이행정도, 가상자산 매각 시 매각 수량 및 수익인식 여부 등의 공시 - 보유자: 회계정책, 규모, 취득경로, 보유 목적, 인식한 손익 등의 공시 - 가상자산 거래소: 거래소 보유분 가상자산 관련 공시, 고객으로부터 위탁 받은 가상자산에 대한 회계정책, 규모 및 관련 위험, 제3자 위탁보관 여부 등의 공시

- ▶ 토론자들은 가상자산에 대한 기준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관련 지침을 제공하는 방안이 실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며, 국내 상황에 맞는 감사절차 및 주식공시사례를 개발할 필요성과 국내 주요 이슈들을 우선적으로 선별하여 논의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함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8 (수) 금융감독원

외감제도 개선을 위해 시장과의 소통을 지속·강화하겠습니다.

- ▶ 외부감사제도 전반이 강화*되어 회사 및 감사인의 외부감사법 준수 관련 고충·애로사항이 다수 발생하였으나 직접적인 이해관계자의 의견청취 및 의견교류 기회가 충분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법에 대해 회사·감사인 및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청취함

* 표준감사시간제 도입,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화, 주기적 지정제 확대 등

- ▶ 주요 의견청취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가. 회사, 회계법인 및 투자자 간담회 결과	
회사	• 감사인 지정에 따른 감사보수 증가 및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등 실무적용 애로 해소
회계법인	• 감사자료 요청이 증가하는 경우 필수적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자료요구로 오인하는 측면이 있으며, 감사인 지정군 분류 요건의 연중 유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해외 IB 등 투자자	• 일관된 정책의 꾸준한 추진 강조

나. 감사인 지정회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보수 및 협의	• 지정회사의 감사보수 및 시간은 최초 제안 후 협의과정에서 다소 감소함 • 협의 후에도 전년 자유선임 대비로는 감사시간 및 보수 모두 상당히 증가함
감사인 재지정	• 재지정을 신청한 회사는 주요 신청사유로 지정감사인의 높은 감사강도 및 과도한 감사보수를 꼽았음 • 재지정된 감사인에 대체적(73%)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모범규준	• 지정회사 대부분(94%)이 감사보수 산출근거에 대해 설명 받는 등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준수율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 청취의견 중 제도보완 필요사항은 평가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을 통해 개선을 추진중이며, 시장과의 지속적인 양방향 소통을 위한 온·오프라인 채널(온라인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간담회 등)을 신설·확대하여 의견을 청취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7 (화) 금융감독원

2022년 결산 시 꼭 확인하세요. - 회계결산 및 외부감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 금융감독원은 2022년 결산을 앞두고 회사 및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공시 및 기말감사 시 특별히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함
- ▶ 주요 내용

다운로드



- 1. 2022년 결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공시해야 함
- 2. 2022년 결산은 2022년 12월 31일 기준이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재무제표 작성·공시해야 함
- 3.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인 회사는 '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 4. 경영진·내부감사인인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함
- 5.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 6.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 위반은 경조치(경고 이하)를 하고 있음
-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 활용

QR 코드



회계감독 방향	내용
1. 회사는 자기책임 하에 재무제표 직접 작성 및 제출	• 회사는 재무제표를 반드시 자기책임 하에 직접 작성해야 하고, 작성한 감사 전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에 제출해야 함
2.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준비 철저	• '21회계연도말 기준 자산 1천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22회계연도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대상이므로 이에 철저히 대비해야 함
3. 내부회계 취약점 발견 시 적극 공시·개선	• 경영진·내부감사인인 내부회계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이를 적극 공시하고 개선해야 함
4. 중점심사 회계이슈 확인 및 신중한 회계처리	• 회사는 금융감독원이 사전예고('22.6)한 '23년 중점심사 회계이슈를 확인하고 관련 회계처리 시 충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5. 회계오류 예방 노력 및 과거 회계오류는 신속 정정	• 회계처리기준에 맞는 결산과 충실한 외부감사로 재무제표에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함 • 회계오류의 신속한 자진정정에 대해서는 조치를 감경하고 있으며, 과실 위반은 경조치(경고 이하)를 하고 있음
6. 외부감사 실시내용 관리 및 공시 철저	• 회사·감사인 모두 감사절차별 감사시간, 인원수 등의 적절한 투입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충실하게 공시해야 함
7. 회계처리기준 해석이 까다로운 경우 '질의회신 및 지적 사례' 활용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질의회신 및 심사·감리 지적 사례를 참고하면 어려운 회계처리기준 해석·적용에 큰 도움이 될 것임

- ▶ 금융감독원은 상기 유의사항을 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공인회계사회 등을 통해 회사·감사인에 안내하고, 이후 충실한 이행 여부 등을 면밀히 점검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6 (월) 금융감독원

회사의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하여 「알기 쉬운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하였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2019년 12월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발간 이후 외부감사법제도 시행과정에서 발생하였던 이슈사항을 중심으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고 제도변화를 반영한 「新외부감사법 가이드북」 개정판을 발간하였음
- ▶ 가이드북 주요 내용

회계감독 방향	내용
1.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의 선임	•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의 범위 및 감사인선임위원회 등 감사인선임절차
2.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제도	• 주기적 지정요건 및 사유별 변화된 감사인 직권 지정사유, 지정 시기, 지정 대상 기간, 지정절차
3. 상장법인 감사인 등록제도	• 감사인의 등록요건·등록절차, 감사인 등록효과 및 미등록 감사인의 감사제한 사항
4. 심사·감리제도	• 감리 착수사유 중심의 감리절차, 감리결과조치 및 이에 대한 불복절차

- ▶ 기업·감사인 등의 체계적인 이해를 돕고, 규정 미숙지로 인한 법규위반 사례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며, 가이드북을 회사 및 회계법인 등에게 배포 및 홈페이지 게시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가이드북
다운로드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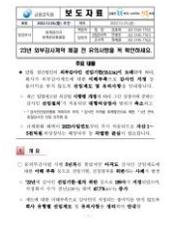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6 (월) 금융감독원

20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전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 ▶ 최근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감사인 선임절차가 적용되던 대형비상장사 범위가 축소되고, 규제완화 혜택이 2023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자산 1~5천억 원 비상장사는 해당여부 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함
- ▶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다운로드



QR 코드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 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1. 주권상장회사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2. 대형비상장회사 금융회사			회계법인	
3. 비상장주식회사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4. 유한회사				감사 또는 회사 (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 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 금융감독원은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23.1)하여 감사인 선임 및 지정제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며, 홈페이지 문의 및 유선질의에 신속하게 답변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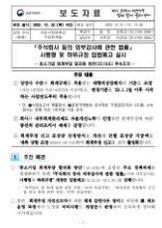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2 (목) 금융위원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하위규정 입법예고 실시 -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22.10.6.) 후속조치 -

- 2022년 10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22.12.22.~ '23.1.30.)를 진행함
- 회계부정 자진신고자에 대한 제재 감면사유 정비를 비롯해 現 제도 운영 과정에서 노정된 미비사항도 개정안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정비해 나갈 예정임
-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대형비상장회사 범위 축소	
현행	•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아서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규율 적용
개선	• 대형비상장회사의 범위를 '자산 1천억 원 → 5천억 원'으로 상향 * 단, ①사업보고서 제출회사, ②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 원) 소속 회사는 현행 자산 1천억 원 기준 유지 ** 변경기준을 '23.1.1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2. 경영진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개선 유도	
현황	•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에 따른 제재수준이 회사의 개선노력과 연계되지 않아 자발적인 취약점 파악·시정 유인이 낮았음
개선	• 회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 또는 개선하는 경우 조치 가중사유에서 제외
3.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기준 제정 및 관리	
현행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율규정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준거기준이 운영되어 기업들의 준수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미비
개선	•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기준은 감독기관이 제정·관리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하여 준수 의무 명확화
4. 회계 부정행위 신고 활성화 유도	
현행	• 엄격한 요건 및 낮은 수준의 포상금 규모로 내부자의 회계부정 신고 유인 부족
개선	• 신고자에 대한 포괄적인 제재완화 및 획기적인 포상금 지급규모 확대

- 외부감사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외감규정·포상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023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2 (목) 금융위원회, 한국회계기준원

[보도참고] 한국, IFRS재단의 지속가능성기준자문포럼(SSAF)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 ▶ 2022년 12월 21일(수) IFRS 재단*은 한국(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공동으로 선임)을 ISSB**의 공식 자문기구인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함 (총 13개 주요 국가가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재단: 전세계 약 146개국에 도입하고 있는 국제회계기준(IFRS 기준)을 제정하는 국제기구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21.11 IFRS재단 산하에 설립된 위원회로, 글로벌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 중

***SSAF(Sustainability Standards Advisory Forum): ISSB의 공식 자문기구로, 지속가능성 기준 제·개정 시 SSAF의 자문을 거쳐야 함

- ▶ SSAF 회원국 선임의 의미

- ISSB가 SSAF의 의견을 중요하게 고려하는 만큼, 한국이 SSAF의 초대 회원국으로 선임되며 향후 ISSB의 기준제정 과정에서 국내 경제·산업 여건, 기업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전세계 주요국가의 금융당국·기준제정기구가 한 데 모이는 만큼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정책과 기준제정 동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됨

- ▶ 금융위원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은 향후 SSAF 회원으로서 연 4회 개최되는 SSAF 회의·논의에 적극 참석·참여할 예정이며, 첫 회의에서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대한 최종기준 및 향후 ISSB 기준제정 방향 등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됨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15 (목) 금융위원회

유관기관 합동으로 ESG 공시기준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국내 기업들이 적용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 Korea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이하, "KSSB")를 설립함
- 국내외 추진배경

다운로드



QR 코드



	배경	추진현황
국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IFRS(국제재무보고기준)재단은 '21.11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 (ISSB)를 설립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지속가능성(ESG) 공시 기준을 제정하고 있음 * '22.3 IFRS S1(일반 요구사항), IFRS S2(기후 관련 공시) 공개초안을 발표했으며, '23년 상반기 최종 기준 공표 예정 → 생물다양성 등 다른 E 분야, S-G 분야도 순차적으로 기준 제정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EU: 기업의 ESG 공시의무를 강화한 CSRD(기업지속가능성보고지침) 시행('24.1.1), ERSR(유럽 지속가능성보고기준) 초안 발표('22.5) 미국: SEC '기후 관련 공시 강화·표준화 방안' 발표('22.3) → 기후 분야 공시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상장기업의 공시 의무화를 제안 (최종안은 미정)
국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금융위원회는 국내 ESG 공시 정책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ESG 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을 발표 * ('25-)일정 규모(예: 자산 2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 ('30-)순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 기준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현재 국제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으나, ESG 공시 관련 국내외 논의가 계속 활발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에 대응하기 위한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전담할 조직이 필요한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에 따라, 회계기준 제정을 담당하는 회계기준원 내 KSSB를 설립하여 내년부터 운영할 예정

-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한국 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 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당국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며, 국내 ESG 공시기준 제정안을 심층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국내 ESG 공시제도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 기대됨
- 금융위원회는 KSSB 설립을 통해 ESG 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갈 계획임
 - **자문기구 신설:** 환경, 기업지배구조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KSSB의 공식 자문기구로서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 확대 개편 및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 신설·운영 예정
 - **국내 ESG 공시제도 정비:**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2023년 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예정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14 (수) 금융감독원

감사품질 향상을 위해 외부감사인과 회계 현안 및 감독방향을 공유하고 소통을 지속하겠습니다

- ▶ 금융감독원은 12월 3일 한국공인회계사협회와 함께 외부감사인을 대상으로 「2022년도 온라인 회계현안설명회」를 개최함
- ▶ 결산시즌을 앞두고 기말감사 유의사항 등을 안내함으로써 충실한 회계감사와 감사품질 제고를 유도함
- ▶ 설명회에는 공인회계사 890여명이 참석하여 회계 현안 및 향후 감독방향 등을 공유함
- ▶ 금융감독원이 제시한 2023년 주요 회계감독 방향 5가지

다운로드



QR 코드



설명회 자료



회계감독 방향	내용
1.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를 위한 회계부정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분식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시를 강화 • 중대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신속·집중 감리하여 엄중 조치 • 회계부정정보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산정기준을 개선
2. 감사품질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 유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시행되는 회계법인 품질관리수준 평가를 공정하게 수행 • 평가 결과를 감사인 지정에 적극 활용 • 상장사 감사인 등록 요건 유지의무 위반 시 엄정 조치
3. 사전예방 중심의 발빠른 회계감독 시스템 구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시의성 있는 회계이슈를 선정·표표 • 이슈별 표준심사방법을 마련하여 집중적·효율적으로 심사 • 지적사항에 대한 종합적 피드백을 기업·감사인에게 제공
4. 시장의 눈높이에 맞게 회계감독 제도·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사인 지정제도 합리화 방안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관련 기업 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 감리절차 선진화 방안을 충실히 이행
5. 기업·정보이용자와 현장 밀착형 소통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상자산 주식공시 모범사례를 배포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새로운 회계 아젠다를 지속 발굴하여 감독지침을 마련 • 외부 공개되는 심사·감리 지적사례 데이터베이스를 확충하여 기업의 회계오류 예방 및 정보이용자의 감시활동을 지원

- ▶ 향후에도 금융감독원은 외부감사인, 회계법인 등과 회계현안을 공유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자리를 마련할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5 (월) 금융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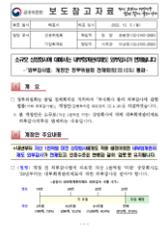
소규모 상장회사에 대해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가 면제됩니다

- ▶ 정무위원회는 금일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개정안을 의결하였음
- ▶ 본 개정안은 소규모(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에 대해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임
- ▶ 상장사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시행 시기
 - **(현행)** 개정 전 외부감사법에 따르면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도 2023년부터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함

연도	'19년	'20년	'22년	'23년
	기 도입			도입 예정
자산	2조 원 (190개, 7.8%)	0.5조 원 (296개, 12.2%)	0.1조 원 (1,028개, 42.4%)	전체 (912개, 37.6%)

- **(개정)** 자산 1천억 원 미만 상장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됨. 다만, 소규모 상장회사(자산 1천억 원 미만)에게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면제되더라도, 외부감사인에 의한 '검토'는 현행과 같이 받아야 함
 - ※ '검토'와 '감사'의 차이: 내부회계 운영실태보고서(경영진 작성)를 대상으로 담당자에게 질문 위주로 검증하는 '검토'와 달리, '감사'는 주요내부통제체계를 감사인이 직접 검증(통제 재수행, 문서검사 등)
- ▶ 동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들의 회계부담이 상당부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며, ① 내부회계 고도화비용(회사당 46백만 원, 1회성)과 ② 내부회계 외부감사 수감비용 (회사당 40~46백만 원, 매년) 절감이 예상됨
- ▶ 외부감사법 개정안은 금년 중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본회의 의결 및 공포 절차를 거치게 되며,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2.2 (금) 행정안전부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 3차 회의 개최

- ▶ 정부는 12월 2일(금) 「범정부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특별팀(TF)」(이하, "범정부 특별팀(TF)") 3차 회의*를 개최하고 국가 안전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범정부 대책을 논의하였음

* 1차 회의(11.18. 행정안전부장관 주재), 2차 회의(11.25.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

- ▶ 범정부 특별팀(TF) 4개 분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 복지부, 경찰청, 소방청 등의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 칸막이 없는 논의를 통해 기관별 과제를 발전시킴
- ▶ 주요 논의사항

주제	내용
1. 초기대응 시스템 및 선제적 재난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급 경찰서 상황실에서 지체없이 상급기관 및 지휘관에게 보고되도록 지휘·보고체계를 재정비하고, 중요 사건 발생 시 관련 내용을 자동으로 전파하는 '112 자동신고시스템' 도입 등을 논의 • 현장 대응 시 소방과 긴급구조 지원기관 간의 재난안전통신망 활용을 활성화하고, 소방과 복지부 간의 구급·응급진료 대응체계도 개선하는 방안 논의 • 하천 범람, 산사태, 도로침수 등 지역에서 재난발생 시 예상되는 위험상황을 발굴하여 지침(매뉴얼)에 반영하고 사전점검 등을 통한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
2. 지역 역량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장 중심의 재난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필요한 지자체·경찰·소방 등 관련 기관의 긴밀한 협업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구성, 현장 대응기관 합동 훈련 실시방안도 논의 • 특히, 경찰청에서는 중간관리자와 기동대원을 대상으로 특별훈련을 추진하고, 소방청은 현장요원 전문성 강화를 위한 가상현실·시나리오 기반 훈련을 추진하는 방안 논의
3. 과학기반 재난안전관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재·정전 등 외부장애에 대비하여 주요통신시설의 통신망과 전력 공급망을 이원화하고 긴급구조 시 정확하고 신속하게 위치를 파악하는 지능형 복합추위 기술을 개발하는 방안 논의 • 지자체가 보유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통합관제센터를 재난안전관리의 중추 역할을 하도록 전환하는 방안도 논의
4. 제도개선 및 안전문화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 안전교육 7대 표준안'에 인파사고, 개인용 이동장치 사고 등 신종 재난을 안전교육에 포함하여 학교 안전교육을 개편하는 방안과 초·중·고등학생 중심의 안전교육을 넘어서 전 생애주기별 대국민 체험형 안전교육으로 하는 방안이 중점 논의

- ▶ 이번 범정부 특별팀(TF)은 국가안전시스템 전반을 개편하는 종합대책을 12월 말까지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 중이며,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과제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과제도 함께 검토하여 개선대책에 반영할 계획임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29 (화) 금융감독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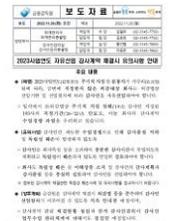
2023사업연도 자유선임 감사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안내

- ▶ 2023사업연도(12월 결산) 주기적지정등본통지가 마무리(11.11)됨에 따라, 금번에 지정 받지 않은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는 외부감사법상 선임기한* 및 선임절차**에 따라 감사인을 자유선임해야 함

* 자산 2조 원 이상 상장회사 등(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 '23.1.2 까지, 그 외 외부감사대상회사: '23.2.14 까지
 **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가 선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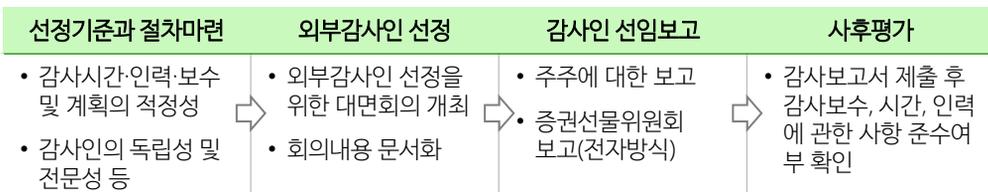
- ▶ 감사인 간 과도한 수임경쟁으로 감사품질 저하 및 독립성 훼손이 발생하지 않게 유의해야 함
- ▶ 감사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다운로드



	감사인	회사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감사법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감사계약조건을 마련하고 독립성 훼손 위협에 대해 면밀히 검토 감사투입시간은 표준감사시간, 회사특성, 감사위험 및 감사인의 판단 등을 고려하여 문서화 및 회사에 제시 감사업무기간 중에도 독립성 훼손위험을 철저히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감사(위원회)는 감사인 선임 전에 선임관련 준수사항 문서화 및 독립성 훼손 등 이해상충 소지가 없는지 검토 후 재무제표 신뢰성이 저하되지 않도록 유의 감사인이 제시한 감사보수·시간·인력·계획·품질(전문성) 등을 검토 및 문서화 감사 종료 후 감사보고서를 제출 받은 경우, 해당 문서화 사항을 감사인이 준수하였는지 확인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A회계법인-B사 자문용역 수행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1~'22.11: 보험계약기준서(IFRS 17, '23년 시행) 도입을 위한 자문용역 수행 ✓ '23년: 외부감사계약 체결 C회계법인-D사 구축용역 수행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4~'22.10: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 수행 ✓ '23년: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첫해 외부감사계약 체결 <p>→ 감사계약 체결 관련 독립성 훼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E사-F회계법인 구축용역 수행 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F회계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 검토 시, 해당 비감사업무가 감사업무와 병행이 금지된 업무인지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하여 비적격 감사인(F회계법인)을 선임 <p>→ 감사인 선임 관련 독립성 훼손</p>

- ▶ 감사인 자유선임 절차 (외부감사법 제10조 등)



- ▶ 금융감독원은 감사계약 체결이 마무리 된 후, 감사인 선임절차 및 감사계약 체결 현황 점검을 통해 외부감사법 위반여부 등을 확인하고 감사인 감리 등을 통해 감사업무 수임의 적정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16 (수) 금융감독원

상장법인의 온실가스배출권 재무공시 현황 점검결과

- ▶ 배출권을 할당 받은 주요 상장법인의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점검한 결과, 2021년 배출권 자산은 7,464억 원, 배출부채는 8,357억 원으로 전기대비 각각 42.5%, 17.8% 증가함
- ▶ 금융감독원이 지난해('21.4) 마련한 「온실가스배출권 주식공시 모범사례」 활용에 따라 상장법인의 재무공시(주석)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함
- ▶ 배출권 내역을 주석으로 공시한 상장법인 수는 전기 대비 증가하였으며, 재무공시 수준은 전반적으로 향상함
- ▶ K-GAAP 주석 요구사항(①~④)을 모두 공시한 상장법인은 12사(전기 6사)이며, 각 항목별 공시 회사 수도 전기 대비 증가함
- ▶ 주석공시 현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주석공시항목)	20년 공시	21년 공시	증감	①~④ 모두 공시		
				20년	21년	증감
① 무상할당수량	12사	25사	+13사	6사	12사	+6사
② 보유배출권수량	11사	23사	+12사			
③ 배출권자산 부채 증감내역	10사	18사	+8사			
④ 배출량추정치	13사	21사	+8사			
				①~④ 모두 미공시		
				20년	21년	증감
				12사	5사	△7사

*정보로부터 배출권을 할당받은 상장법인 중 상위 30사 주석공시 현황

- ▶ 향후에도 배출권 관련 재무공시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주석 공시 모범사례를 활용토록 안내하여 충실한 재무공시를 유도할 계획이며, 도입을 준비중인 지속가능성 국제공시기준과 관련하여 재무정보와 연계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나 주석공시관련 유의사항을 발굴·안내할 예정임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 ▶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국내은행과 함께 금융사고 예방 및 내부통제 개선을 위한 은행권 TF를 운영(7.26~10.18)하여 최근 금융사고 발생원인 분석, 은행권 내부통제 운영현황 점검결과 등을 바탕으로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마련함
- ▶ 금융감독원과 은행권은 내부통제 실패와 이로 인한 거액 금융사고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가시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금번 혁신방안이 내부통제문화 조성 및 인식 전환의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함
- ▶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주요 내용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주요 내용
가. 내부통제 인프라 혁신	
1. 준법감시부서 인력규모·전문성 확보 최소화기준 설정	① 준법감시부서 인력을 총 직원의 최소 0.8% 이상 & 15명 이상(대형은행 기준) 확보 ② 부서 내 전문인력 20% 이상(주요 6개 분야 포함 필수) 확보 ※ '27년말(인력비율), '25년말(전문성 제고)까지 단계적 추진
2. 준법감시인 선임 시 자격요건 강화	① 선임 시 자격요건에 관련업무(준법·감사·법무 등) 경력 추가 ※ '25.1.1 이후 선임 시부터 시행
3.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체계 마련	① 순환근무 대상 직원의 5% 이하로 관리 (현재 시중은행은 11.4% 수준) ② 장기근무자 인사관리 기준 마련 - 장기근무 승인권자를 기존 부서장에서 인사담당임원으로 상향 - 장기근무 승인요건으로 1) 불가피성, 2) 사고위험 통제 가능성 (채무·투자현황 확인 등) 심사 의무화 ※ '25년말(관리비율)까지 이행

나. 주요 사고예방조치 세부 운영기준 마련

1. 명령휴가 제도	① 명령휴가 대상 본·지점 고위험 직무 확대, 장기근무자 포함 ② 위험직무자 등 강제 명령휴가 의무화(일반 휴가 등 대체 불가) ※ '23.6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2. 직무분리 제도	① 직무분리 대상 고위험 거래 범위 확대·구체화 ② 직무분리 관리시스템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실시 ※ '23.6월까지 관련 전산시스템 구축 완료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금감원, 은행권과 함께 「국내은행 내부통제 혁신방안」 마련 (계속)

구분	주요 내용
3. 내부고발자 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내부고발 익명성 강화(내규상 실명신고 문구 삭제) ② 고발유형별 보상기준 다양화 ③ 고발의무 위반에 대한 검사 및 조치 의무화
4.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지점 이외 본점 부서 사고예방대책 마련 의무화 ② 사고예방대책의 직무별·직급별 역할과 책임(R&R) 구체화 ③ 자점감사·교육 등 내부통제 활동과 연계 <p>※ '23.7.1일(직무분석 필요)부터 시행</p>

다. 사고 취약 업무프로세스 고도화 추진

1. 시스템 접근통제 고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밀번호를 대체할 소유·생체기반 인증방식 도입 확대 <p>※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p>
2. 채권단 공동자금 검증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업구조조정 관련 공동자금 채권단 검증 의무화
3. 자금인출 시스템 단계별 검증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기안→날인→지급시스템간 연계 체계 구축 ② 단계별 중요사항 검증 의무화(금액, 결제번호, 수신인 등) <p>※ '23.1분기 중 세부 이행기준 마련 및 단계적 추진</p>
4. 수기문서 전산관리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수기 기안문서 전산 등록·문서번호 자동 부여 의무화 ② 수기 접수문서 활용 시 검증 체계 구축 <p>※ '23.7.1일(전산구축 필요)부터 시행</p>

라. 내부통제 일상화 및 체감도 제고

1. 상시감시 대상 확대·체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시감시 대상 본점까지 포함, 중요 이상지표 보고·처리·사후관리 체계 강화
2. 자점감사 점검기능 실질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점감사 결과보고 체계화, 자점감사 부실징후 영업점 현장점검 절차 마련 등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03(목) 금융감독원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

➤ 2019년 이후 상장폐지기업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

- 상장폐지 전까지 영업손실 지속 등 '관리종목' 지정 사유나 횡령·배임 혐의 등 '실질심사대상' 지정 사유가 연쇄·복합적으로 발생했고, 관련 사유 최초 발생 후 3년 이내에 상장폐지에 이르는 경향을 보임
- 상장폐지 직전 대규모 당기순손실 확대로 자본잠식이 심화되고, 이를 모면하기 위한 빈번한 CB·BW*발행 및 유상증자 등의 자본확충이 수반됨
*CB(Convertible Bond): 전환사채, BW(Bond with Warrant): 신주인수권부사채
- 상장폐지기업은 경영안정성과 밀접한 최대주주 변경이나 내부통제 부실 등에 따른 불성실공시가 빈번하게 증가함

➤ 상장폐지 제도 구분

1. 형식요건	'단독 상장폐지사유'와 '관리종목지정 후 상장폐지사유'
2. 실질심사	기업의 상장적격성에 대한 종합적 또는 개별적 사유에 대한 실질심사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

➤ 상장폐지기업 연도·사유별 현황

구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6월)	합계
집중분석대상	12	15	4	15	20	9	75
형식요건	9	14	3	12	14	7	59
감사의견 비적정	5	13	1	10	9	6	44
정기보고서	-	-	1	2	2	-	5
부도·파산 확정	1	1	1	-	3	1	7
자본잠식	2	-	-	-	-	-	2
손익약화	1	-	-	-	-	-	1
실질심사*	3	1	1	3	6	2	16
횡령·배임 혐의	1	1	-	1	3	1	7
회계위반	2	-	1	-	1	-	4
불성실공시	-	-	-	1	2	-	3
경영권변동	-	-	-	1	-	1	2

* 실질심사: 미해소된 다수의 실질심사대상 사유가 병존하는 경우 그 중 최초 발생 사유를 기준으로 분류

다운로드



QR 코드



II. 주요 규제 동향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1.03 (목) 금융감독원

최근 상장폐지기업의 사전징후에 따른 시사점 (계속)

➤ 상장폐지기업의 특징

재무적 특성	
당기손익·자기자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자본 대비 대규모 당기순손실 점차 확대 • 결손누적·확대로 인해 자본잠식 증가
현금흐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적인 재무활동 조달 현금유입액(+) → 투자활동 및 영업활동 현금유출액(-) 이용
자금조달 증권종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규모로 빈번하게 발행하는 주식관련사채(CB·BW 등) 및 주식(유상증자)에 비해 미미한 일반사채 발행
자금조달 발행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없는 사모/소액 공모 방식 주로 발행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공모방식의 발행은 미미함
비재무적 특성	
최대주주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주주변경 공시(거래소)가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기업의 경영안정성과 밀접하게 연관
불성실공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성실공시법인 지정(거래소)이 빈번하고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업의 인력·조직(의식·태도·전문성)과 내부통제 부실 등에 기인

- 상장폐지기업(75사, 5년 연평균)은 상장기업(2,229사, '21년 1년)에 비해 앞서 분석한 재무적·비재무적 특징이 보다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음
- 상장폐지기업은 상장기업에 비해 평균적으로 연간 주식관련사채·주식 발행, 최대주주변경 공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발생 건수가 각각 4.4배(2.05/0.47), 5.4배(0.56/0.10), 9.2배(0.53/0.06) 수준임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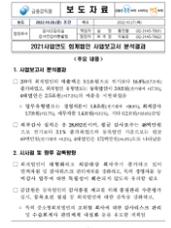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0.28 (금) 금융감독원

2021사업연도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분석결과

- ▶ 회계법인이 대형화되고 외부감사법 대상 회사수가 증가하고 있어 인적자원 및 감사리스크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경영자문 등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
- ▶ 금감원은 등록법인의 감사품질 제고를 위해 품질관리 수준평가 실시, 등록요건 점검 등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특히 중소형회계법인의 고위험 회사에 대한 감사리스크 관리 및 수습회계사 관리체계 내실화 등을 유도할 계획임
- ▶ 사업보고서 분석결과에 대한 시사점

다운로드



QR 코드



구분	내용
1. 회계법인 대형화 추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회사 감사인 등록제 시행 등으로 회계법인간 합병분할, 인력 증원으로 회계법인의 규모가 대형화* 되고 있음 * 등록회계사 100명 이상 회계법인: 17개(FY19) → 19개(FY20) → 20개(FY21) • 소속 회계사에 대한 교육 강화, 감사업무 배정 시 인적자원의 적격성 심사 등 인적자원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
2. 감사리스크 관리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新외부감사법 도입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던 외부감사대상회사가 증가*하였으나, 등록법인의 감사실적 비중**은 전기보다 감소 * 전체 외부감사 실적 : 27,942(FY19) → 26,969(FY20) → 28,852(FY21) ** 등록법인 외부감사(회사 수 기준) 비중 : 59.7%(FY19) → 61.3%(FY20) → 60.2%(FY21) • 일반법인(감사비중 39.8%)도 감사품질관리 및 위험관리를 강화하여 부실감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3. 비감사 업무에 대한 독립성 강화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의 경영자문 매출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당기 경영자문 매출액이 크게 증가하여 회계감사 매출비중을 상회** * 경영자문 매출액 : 1조 3,137억원(FY19) → 1조 4,362억원(FY20) → 1조 8,494억원(FY21) ** 전체회계법인 경영자문 매출비중 : 36.3%, 회계감사 매출비중 : 32.5% • 감사대상회사에 대한 비감사용역 수입 시 위험평가 및 독립성 점검을 철저히 수행하여 독립성 훼손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
4.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충실한 작성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는 주요 경영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외부감사인 선임 기초자료 및 감사인의 감사품질 판단자료 등으로 활용됨에 따라 유용성이 증대될 수 있도록 사업보고서를 보다 충실하고 정확하게 작성 및 공시할 필요 ※ 회계법인이 사업보고서를 미제출, 허위기재, 기재사항 누락 또는 부실기재 시 지정제외점수 부과 등 조치

II. 주요 규제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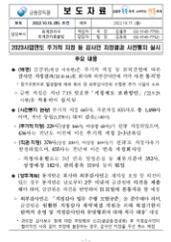
우측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보도자료 원문을 다운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22.10.18 (화) 금융감독원

20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등 감사인 지정결과 사전통지 실시

- ▶ 대부분의 상장회사가 포함된 12월 결산법인을 대상으로 주기적 지정 등 외부감사법상 감사인 지정결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실시하고 있음
- ▶ 본통지(11.11)의 사전단계로 회사와 회계법인이 제출한 지정기초자료를 점검하여 2022년 주기적 지정 및 직권 지정 대상회사를 선정함
- ▶ 지정제도 개요

다운로드



QR 코드



주기적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외부감사인을 지정 *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비상장회사 &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 50% 이상 &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
직권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리결과와 외부감사인 지정조치, 관리종목 등 투자자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사유 발생시 외부감사인을 지정

- ▶ 지난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지정제도 보완방안('22.9.29. 개정된 외부감사규정 시행)에 따라 개편된 회사 및 감사인군 등을 적용하였음
- ▶ 지정제도 보완방안 주요 내용

구분	내용
1. 기업·감사인군 분류기준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정군을 5개 → 4개로 조정하고 회사군 '가'군 범위를 확대(5조 이상 → 2조 이상), 감사인군은 분류기준을 강화* * 품질관리담당자 수 기준 상향, 손해배상능력을 보험금으로 변경 등
2. 감사품질의 지정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회계사 수 기반의 감사인 점수에 감사인감리 결과와 품질관리수준 평가결과 반영
3. 지정방법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일군 내 재지정 도입 및 감사위험이 높은 직권지정사유 (3년 연속 영업손실, 관리종목, 감리조치 등)의 하향재지정 제한* * 감사위험과 연관성이 낮은 주기적지정, 상장예정, 회사요청 등은 하향재지정제 유지
4. 일반 회계법인 우선 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 회계법인(미등록 감사인)이 감사품질 역량을 갖추고 지정신청할 경우 비상장사 2사를 우선 지정
5. 시행시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품질관리인력요건*(감사인군 분류기준)과 감사인감리 결과반영** 등 유예사항을 제외한 개선내용은 금융위 의결('22.9.28.) 후 즉시 시행 * '나'군의 140% 이상과 '다'군의 120%이상 요건을 6개월 유예 ** 규정개정 이후 감사인감리 결과 증권선물위원회가 개선권고한 사항부터 반영

- ▶ 회사 및 외부감사인 유의사항
 - 회사는 지정사유 등 사전통지 내용을 확인하고, 재지정 요청사유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함
 - 외부감사인은 지정회사에 대하여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또는 윤리규정상 독립성 훼손 사유(비감사용역 수행, 재무적 이해관계 등)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업지배구조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매일경제]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웨비나 개최 [조세일보]
- 감사위원회포럼, 30일 '가상자산 고려사항' 정기포럼 [한국세정신문]
- ESG는 수익 창출 위한 자본주의 넥스트 전략... '투명한 공시 핵심' [인포스타데일리]
- 경제개혁연대, 11개 대기업에 정기주총서 '임원결격 명시' 등 주주친화적·건전한 지배구조 갖추는 방향으로 정관 변경안 상정 요청 [AP신문]
-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현황 공개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코스피시장 지난해 공시 7.3% ↑ ... 수시·공정·영문공시 늘었다 [머니투데이]
- 연임 고사하는 금융권 사외이사 늘어난다 [연합인포맥스]
- ESG 평가시장 투명성 제고 위한 가이드선 마련해야 [연합뉴스]
- 국내 기업 24곳 '2022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월드지수'에 편입 [동아일보]
- 금융지주 회장 도덕성 강조한 금감원장... 지배구조 메스 대나 [뉴시스]
- 미국주식엔 있고 한국주식에는 없는 것 [비즈니스워치]
- 11월부터 기업지배구조 우수 기업 선별해 '코스닥 우량기업 세그먼트 지수 발표' [한겨레]
- 세계13위 한국증시, 내적으로 미성숙...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발목 [문화일보]



이사회·감사위원회

- 100대 기업 여성 사외이사 100명 육박... 20% 돌파 [서울파이낸스]
- 10년 전으로 돌아간 대기업 공시... 5억 미만 내부거래도 이사회·공시 안 한다 [서울신문]
- 4대 금융지주 사외이사 85% 임기 만료...올해 주총서 대거 물갈이 되나?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이사회, 경영층이 안전보전에 투자를 결정하게 만드는 방법 [세이프티퍼스트닷뉴스]
- 미흡한 주주 배려... 기업 70% 주총 2주 전 통보 [이데일리]
- 상장사 이사회 주요 현안, 올해도 'ESG' [조세일보]
- 기업들 이사회 중심 경영 확산, 헤드헌팅회사 이사회 서비스 본격 확대 [비즈니스포스트]
- 이사회 내 여성 이사 선임한 기업 비중 올해 첫 50% 넘겨 [연합인포맥스]
- 집중투표 배제에 집중하는 대형 상장사들 [비즈니스워치]
- 이복현 금융감독위원장 "금융지주 경영진·이사회, 공정한 절차로 구성해야" [한겨레]
- 글로벌 이사회 다양성 추적 보고서, 이사회 다양성 확대에 따라 포용성 요구 늘어 [뉴스와이어]
- 이사회 참여 100%... CE-CFO의 '선두주자' 그룹 [더벨]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 딜로이트 그룹

- 딜로이트, 탄소 중립 경영 본격화... 2030년까지 100% 재생 에너지 활용 [더구루]
- 모니터 딜로이트 김명구 파트너 - "불확실성의 시대, 오직 고객에게 집중하라" [한국섬유신문]
- 딜로이트 금융산업 리더 신병오 파트너, "금리 관리, 시나리오별 예측이 필요한 시점이다" [연합인포맥스]
- 홍중성 한국딜로이트그룹 대표, 일자리의 미래, '그린칼라' [한경에세이]
- 솟품이 이끄는 VCC 마케팅, 한국 딜로이트 그룹 「VCC 마케팅 2022」 리포트 발표 [매드타임즈]
- 딜로이트 컨설팅 코리아, '모니터 딜로이트' 韓 시장 출범 [ZD넷코리아]
- [ESG커넥트포럼] 딜로이트 안진 "공급망의 ESG 관리도 중요" [뉴스트리]
- 한국 딜로이트, 여성 영리더 승진자 간담회 개최 [이데일리]
- 미국, 중국 넘어 아시아와 디커플링? 반도체는 어렵다 [이코노미조선]
- 「홀리데이 리테일 서베이 2022」 국문본 발간, 물가상승에도 지갑은 열린다 [메트로신문]
- 한국딜로이트그룹, 소외 아동·청소년 위한 '희망더하기 자선야구대회' 후원 [헤럴드경제]
- 홍중성 딜로이트안진 대표... 감사투명대상 외부감사인 부문상 [한경닷컴]
- 글로벌 시스템으로 품질 향상 총력 회계감사 전문성·투명성 크게 높여 [매일경제]
- 딜로이트 안진, 스펀딩과 기업 자금관리 서비스 고도화 전략적 업무 협약 체결 [세계일보]
- 한국 딜로이트 그룹, 2022 기후행동 점검 국문 리포트 발표 [아주경제]
- "신기술은 수단일 뿐 목표 아냐, 고객경험 명확해야" 김태환 딜로이트 디지털 리더 [조선비즈]



회계투명성

- 한공회, 2030 비전 '국가경쟁력을 선도하는 회계투명성' 선포 [한국세정신문]
- 유통량이 금과옥조... 코인 발행사, 투명성 높인다 [이데일리]
- ESG 경영 강조 시점서 터진 악재, 의료산업 전반 인식 제고 필요 [의학신문]
- 내년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 보고 [연합뉴스]
- 금융감독원, 감사인 지정 본통지 실시... 재지정 55% 감소 [뉴시스]
- 국내 거래소 최초 가상자산 내역 공개... 거래소 운영 투명성 제고 [연합뉴스]
- 상장폐지 기업 사전 징후 살펴보니... 회계·경영투명성 관련 사유 비중 증가 [머니S]
- 금융감독원, 가상자산 회계 지원방안 마련... 주식공시 의무화, 정보 투명성 제고 필요성 [조선비즈]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방지

- 임직원 횡령·무자본 M&A 허위 재무보고 주의하세요 [매일경제]
- 임직원 횡령 등 부정행위 증가 전망... "회계법인 감사 역량 강화해야" [조선비즈]
- 기업 횡령액 왜 갑자기 늘어났지? 최근 3년간 6배나 [매일경제]
- 금감원, 내년 회계부정 감독 강화하겠다 [조세일보]
- 전세계 소비자의 21%, 개인정보 유출 기업 이용 안한다 [보안뉴스]
- 레버리지로 파산하는 알트코인과 거래소... 경영진 견제감시장치 없다 [한경 코알라]
- 불붙는 가상자산 규제... 'FTX 사태' 재발방지책 금융당국 규제체제 정립해야 [머니S]
- 하도급법이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는 이유 [비즈한국]
- 연구개발 부정행위 제재 금액 1,490억 원... 617억 원 못 받았다 [스카이데일리]
- 바이오기업 부정행위 등 논란에도 10년간 상장폐지 無 [디지털타임스]
- 당·정, 가상자산 거래소 파산 시 이용자 예치금 보호 및 부정거래 행위 규제 [ZD넷코리아]



규제 동향

- 평행선 걷는 회계개혁... 개선안 도출 '난항' [MK증권]
- 확 바뀐 '보험사 회계장부' 옥석 가리기는 아직... 새해 IFRS17 도입에 업계 긴장 [매일경제]
- 자산 1000억 원 미만 상장사 회계감사 부담 완화된다 [한경]
- 회계 개혁 논의 원점... 기업 vs 회계법인 이견에 신뢰감법 개선 재검토 [이투데이]
- '감사인 지정제' 완화 추진...자유 선임기간 6년에서 9년으로 연장 유력 [조선일보]
- 대형사고 있었지만 줄어든 횡령, 다만 피해액은 작년과 유사 [이투데이]
- 회계개혁 성과 놓고 재계·회계업계 팽팽하게 대립 [내일신문]
- 감사인 등록제 도입 후... 회계법인 '부익부 빈익빈' [한경닷컴]
- 법인세 인하 혜택, 도입 시 103개 기업에 집중 [연합인포맥스]
- 3년 만에 시작된 '회계대전'... 금감원 "과도한 경쟁 자제" 당부 [머니투데이]
- 자산 1천 억 원 미만 상장기업, 외부감사 면제된다 [뉴시스]
- 외부감사 강제 교체... "회계 투명성 높였다" VS "부작용만 키웠다" [한경닷컴]
- 美 PCAOB, 뉴욕증시 상장 중소기업 회계감사 자료 모두 제공받아 [뉴스핌]
- 금감원 감사인 자유선임 시 '감사계약조건' 마련 [뉴스원]

III. 국내외 뉴스

기사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M&A

- 금융지주 M&A 격돌... 핀테크가 승부처 [대한금융신문]
- 고금리에 투자 얼어도... 500억 안팎 중소형 M&A는 활발 [서울경제]
- 글로벌계약 빅딜 4건 성사... 'JP모건'발 M&A 신호탄 [데일리팜]
- M&A 관히 했나... '속쓰린 청구서' 날아온다 [한국경제]
- M&A가 살길... 제약·바이오업계 '빅딜' 본격화 [조선비즈]
- NH투자증권, 리테일 총괄 신설·M&A조직 확대 [아시아경제]
- '사업 다각화' 속도내는 종합상사... M&A·신사업 구축 박차 [이데일리]
- 국내 재계 순위 지각변동 예고... M&A가 변수 [뉴스핌]
- 올해 제약업계 최대 M&A... 美암젠, 36조에 호라이즌 인수 [아시아경제]
- 경기침체에도 글로벌 바이오 M&A 증가... 9월 3건→10월 6건 [머니S]
- 골드만삭스 '자금조달 비용 증가로 M&A 둔화' [연합인포맥스]
- 돈도 없고 딜도 없다... 보릿고개 지나는 M&A 시장 [머니투데이]
- M&A에도 보험 든다? 거래 끝나고 문제 생기면 보상 [한경코리ाम마켓]
- 유상증자부터 M&A까지... 생명보험업계, 자회사형 GA 몸집 키우기 총력전 [뉴스컴퍼니]
- 매각설 도는 증권업계... M&A 현실화 가능성 주목 [뉴데일리]
- CEO 10명 중 4명, 향후 1년 내 M&A 추진할 예정 [서울파이낸스]

IV. FAQ

1. 주주총회 개최 시 감사(위원회)에 자료 제출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주주총회 개최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 주주총회 자료 제출 기한

- 상법에 따라 이사는 매 결산기마다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원칙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받은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의 6주일 전에 감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함(상법 제447조, 제447조의2, 제447조의3)
- 외부감사법에 따라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이사가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재무제표 포함)를 작성해야 하고, 이를 정기총회의 6주일 전(연결재무제표는 4주일 전)에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해야 함(외부감사법 제6조, 동법 시행령 제8조)
 - * 재무제표 관련 제출 서류: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흐름표, 주석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연결기준 서류 제출)

➤ 주주총회 시 감사(위원회)의 역할

- 상법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이사가 주주총회 개최 이전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야 함(상법 제413조)
- 감사(위원)는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의안 및 서류조사에서 수행한 내용의 이상 유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해야 하며(상법 제413조), 이는 감사(위원)이 주주에게 보고한다는 의미임
 - ✓ 만약 의안 및 서류조사에서 이상 사항이 없다면 해당사항이 없음을 반드시 진술해야 함

IV. FAQ

2. 사외이사의 재선임 시 재직기간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임기 연장이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 사외이사 재직 연한은 상법에 따라 동일인이 상장회사에서 6년, 그 계열사 포함 9년을 초과하여 재직할 수 없음(상법 시행령 제34조 제5항 제7호)
- 사외이사로서 재직된 기간 전체가 상기 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 잔여기간을 임기로 하는 재선임은 가능할 것임

[참고자료: 법무부 질의응답('20.02)] 상장사에서 5년간 재직된 사외이사를 임기 2년으로 재선임할 경우의 재직기간 산정은?

- 사외이사 선임 시 사외이사에게 사외이사 결격사유가 없는 한 일단 선임은 유효함
- 그러나 사외이사로 재직하면서 그 재직 기간이 상법 시행령에서 정한 연임 제한을 초과하는 경우, 사외이사직을 상실하게 된다고 보아야 함

[관련법규]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 ③ 사외이사는 해당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한다. 사외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7. (생략)

상법 제542조의 8(사외이사의 선임)

- ② 상장회사의 사외이사는 제382조제3항 각 호 뿐만 아니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직을 상실한다.
1. ~ 7. (생략)

- 상법상 사외이사의 임기는 정관에 의해 일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음

[참고자료: 법무부 질의응답('20.02)] 회사가 정관으로 '임기 중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 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임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정한 경우의 임기 연장 가능 여부는?

- 상법 제383조 제3항의 취지* 및 법률과 시행령의 관계를 고려 시, 사외이사의 재직기간이 6년 또는 9년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사외이사의 임기를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됨
- * 상법 제383조 제3항은 임기 만료되는 이사에 대하여는 임기 중의 결산에 대한 책임을 지고 주주총회에서 결산서류에 관한 주주들의 질문에 답변 및 소명 기회를 주고, 회사에 대하여는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이사 임기가 만료될 때 마다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이사를 선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한 것에 그 취지가 있음 (대법원 2010다13541)

[관련법규]

상법 제383조(원수, 임기)

- ③ 제2항의 임기는 정관으로 그 임기 중의 최종의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의 종결에 이르기까지 연장할 수 있다.

* 법무부, 「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관련 질의응답」, 2020.02

IV. FAQ

3. 특정 부서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점검(평가)과 감사(위원회)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나요?

-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라 회사의 대표자는 매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에 보고하고, 감사(위원회)는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이사회에 보고해야 함
 - 경영진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보고하기 위해 내부회계관리제도를 평가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는 독립적으로 감독자의 관점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평가기능을 수행하고 이사회에 보고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적정한 운영과 지속적인 개선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함(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3)
- 만약 감사위원회 산하의 내부감사부서가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보고를 위한 통제 설계 및 운영평가를 수행한 경우,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가 작성한 평가 계획과 수행한 절차 및 결과 등을 충분히 관리·감독하였다면 감사위원회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독립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거나 내부감사부서 내에서 경영진의 평가에 참여한 인원과 감사(위원회)의 독립적 평가에 참여한 인원을 분리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 확보 방안

- 감사(위원회) 보고라인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임면권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에 대한 성과평가권
- 감사(위원회)의 내부감사부서 예산권
- 내부감사부서의 장을 임원급으로 임명

[관련법규]

감사위원회 모범규준 IV.5.1(내부감사부서의 구성)

- 내부감사부서의 책임자는 임원급으로 하고, 감사위원회가 내부감사부서 책임자의 임면에 대한 동의권 및 평가권한을 갖도록 함으로써 내부감사부서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함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시 경영진의 평가와 관련된 자료를 주로 활용하고, 경영진의 평가 절차가 적절하지 않거나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적인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6)
 - ✓ 추가적인 테스트의 수행 방식은 전문가를 활용하여 독자적으로 평가하거나, 회사의 내부감사기능을 활용할 수 있으며, 평가절차 및 그 결과를 문서화하여 충분한 근거자료를 마련하여야 함

* 내부회계관리제도운영위원회, 『내부회계관리제도 모범규준 등 적용 FAQ』 43번, 2022.02.07

IV. FAQ

4. 감사(위원회)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시의 역할은?

▶ 감사(위원회)는 경영진과 독립적인 입장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며, 미비점이나 취약점을 시정하게 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함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95)

• 감사(위원회) 활동에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면 독립적 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음

- ▶ 평가기간의 위험평가 결과를 포함한 평가계획의 적정성 검토
- ▶ 운영실태보고서에 모든 중요한 취약점이 포함되었는지 확인
- ▶ 운영실태보고서 상 미비점 평가, 개선 조치의 적정성 및 이행 현황 확인
- ▶ 내부회계관리규정 위반이나 운영실태보고서상 미비점으로 인한 성과평가 반영 계획이나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외부감사인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계획 및 결과의 적정성 확인
-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독립적 평가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 ▶ 내부회계관리제도와 관련된 내부고발 사항의 검토 및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미치는 영향 확인
- ▶ 운영실태보고서상 기타 항목의 적정성 확인과 내부회계관리제도 관리감독을 위한 검토

•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를 평가하여 평가보고서를 작성하고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 평가 관련 대면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내용을 문서화해야함(외부감사법 제8조 5항, 동법 시행령 제9조)

•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 개최 1주 전까지 평가보고서를 이사회에 대면 보고해야 함(외부감사법 시행령 제9조 제7항)

✓ 감사(위원회)의 평가보고서에 포함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보고 모범규준, 문단

- ▶ 평가기준일에 평가 대상기간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운영의 효과성을 평가하였다는 사실
- ▶ 경영진이 선택한 내부통제체계와 이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책임은 대표이사 및 내부회계관리자를 포함한회사의 경영진에 있으며 감사위원회는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사실
- ▶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및 운영의 평가기준으로 평가보고 모범규준을 사용하였다는 사실
- ▶ 중요성의 관점에서 평가보고 모범규준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결론
- ▶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와 운영상의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설명
- ▶ 중요한 취약점이 있는 경우 중요한 취약점에 대한 시정조치 계획 또는 이미 수행 중인 절차
- ▶ 감사위원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를 참고하여 평가하였다는 사실, 추가적인 검토 절차를 수행한 경우 해당 사실
- ▶ 별첨 : 상세평가내용
 - 운영실태보고서에 보고한 중요한 취약점 요약
 - 권고사항

IV. FAQ

5.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 ① 현재 입법예고 중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이하 '시행령 개정안' 이라 함)에 따라 2023 사업연도에는 대형비상장회사에서 제외될 비상장회사 (금융회사는 아님. 이하 동일)는 2023사업연도 감사계약 체결 시 대형비상장회사에게 부과되는 감사인 선임절차*를 준수해야 하는지요?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 운영, 3년 연속 동일감사인 선임, 감사인 자격을 회계법인으로 제한

➢ 해당 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회사가 아닌 비상장회사는 대형 비상장회사에 대해 부과되는 감사인 선임절차 등의 준수 의무는 없음

-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변경된 기준*은 2023사업연도 (2023.1.1.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즉시 적용됨

* (현행) 전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 (변경) 전기말 자산 5천억 원 이상

(단,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및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회사는 전기말 자산 1천억 원 이상)

[관련법규]

입법예고 중인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 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제1항에 따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1천억 원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 1천억 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5천억 원

- ② 회사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칙>

제2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해당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관련 FAQ』, 2023.1

IV. FAQ

5.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② 2022사업연도에는 대형비상장회사이고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23사업연도에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아닌 회사가 2022사업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경우 외부감사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해당 재무제표를 동시 제출해야 하는지요?

➢ 해당 회사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아닌 2023사업연도의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에는 해당 재무제표를 증권선물위원회에 동시 제출해야 할 의무는 없음

- 해당 회사가 대형비상장회사에 해당하는 2022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에게 제출할 때에는 외부감사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에도 동시 제출(정기총회 개최 6주전)해야 함

* 2022사업연도의 감사 前 재무제표는 2021년말 기준(자산 1천억 원)으로 대형비상장회사 여부가 결정된 회사에 2022사업연도에 대한 제출의무가 既부과되어 있던 사항임

[관련법규]

외부감사법

제6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② 회사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감사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주권상장법인인 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는 제2항에 따라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기한방법·절차 등 제출에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감사법 시행령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 ③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회사를 말한다.
 1. 대형비상장주식회사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이하 "금융회사"라 한다)
- ④ 법 제6조 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감사인에게 제출한 재무제표를 말한다

* 한국공인회계사회,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대형비상장회사 기준 변경) 관련 FAQ』, 2023.1

V. 주요 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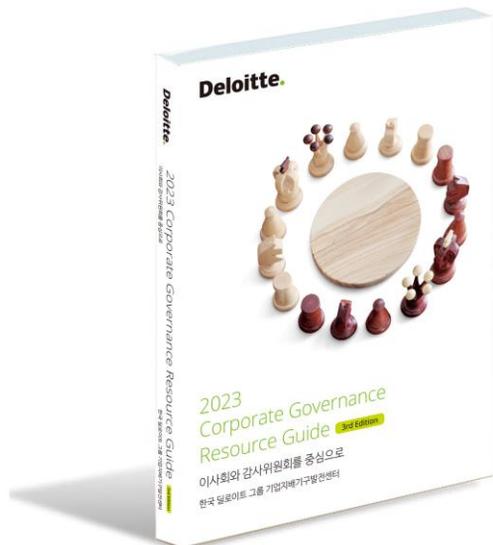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 개정판 발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이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12월 27일, 기업지배구조의 핵심인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의 역할 모델에 대한 선진 프레임워크와 딜로이트 글로벌 전문가들의 통찰력을 모아 정리한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Corporate Governance Resource Guide)」 개정판(3rd Edition)을 발간함
- 「2023 기업지배구조 리소스 가이드」는 1장 '기업지배구조', 2장 '이사회', 3장 '감사위원회'로 구성됨
-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은 "본 개정판이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선진화 및 회계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발전 방향을 고려하고 계시는 이사회와 감사위원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함
- 본서는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인 박재한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의 감수를 통해 완성도를 높임
- 한국 딜로이트 그룹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함 (무료 제공)
 - ※ 배포부수 제한으로 선착순 접수에 한하여 제공

신청하기

QR 코드



V. 주요 행사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2022 웨비나 개최 결과

구분	상세
일시	2022년 11월 23일 (수) 14:00 ~ 16:00
장소	온라인 생중계 웨비나 다시보기 (클릭 시 이동)

다시보기

QR 코드



▶ 2022 웨비나 시간표 안내

시간	내용	Speaker
오후 1:55~2:00 (05분)	참석자 안내	사회자: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오후 2:00~2:05 (05분)	인사말씀	Audit & Assurance 본부 장수재 본부장
오후 2:05~2:20 (15분)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 감사위원회 동향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김한석 센터장
오후 2:20~2:55 (35분)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자문위원 박재환 중앙대학교 교수
오후 2:55~3:05 (10분)	Break Time	
오후 3:05~3:25 (20분)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Transformation & Analytics 이승영 수석위원
오후 3:25~3:45 (20분)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리스크자문본부 채수완 이사
오후 3:45~4:00 (15분)	Q&A / Closing	세션 강연자

▶ 이번 웨비나는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역할 제고 및 당면한 주요 실무 수행 지원을 위해 기획됐으며, 국내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에게 집중되고 있는 아젠다로 구성되어 총 4개의 세션을 선보임

V. 주요 행사

➤ 세션 1. 서베이 결과로 알아보는 글로벌 이사회·감사위원회 동향

- 최근 딜로이트 글로벌에서 실시한 서베이 및 인터뷰의 주요 결과 중심으로 설명함
- 글로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동향에 대한 설명 및 시사점을 제시함
- 이사회와 감사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 선진화를 통해 지속가능성장 및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감독활동을 수행하고 주주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함
- 딜로이트 지배구조 프레임워크 소개: 거버넌스의 구성요소를 정의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이사회·감사위원회가 감독해야 할 영역들을 효과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모델을 제시함

➤ 세션 2. 현행 회계감독기구에 대한 이해 -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중심으로

- 회계 감독과 위원회 운영 및 결정 과정을 설명함
- 회계감독과 재무보고품질 (Financial Reporting Quality), 재무보고 리스크, 회계감리와 제재, 행정 및 민형사상 제재, 재무보고 리스크에 대한 대응 사례 소개 및 시사점 공유를 통해 회계 감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함

➤ 세션 3. 자금사고방지 현황과 대응방향

- 최근 기업들의 새로운 불안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는 자금사고에 대한 현황을 파악함
- 자금사고 실무사례(총계정원장테스트, 벤포드법칙, 가공의 거래처, 회계원장과 현금흐름 대서, 상대계정분석)를 소개하고, 효과적으로 자금사고를 진단 및 탐지할 수 있는 실무 전략을 제시함

➤ 세션 4. 데이터 기반 상시 모니터링

- 최근 IT 시스템 활용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
- Timing - 사후 점검 위주 감사 → 적시 인지 감사 : 감사는 타이밍이 중요하며, 사고가 확산되는 것을 막는 것만으로도 가치가 있음
- Prevention - 사후 개선 → 진단을 통한 예방 감사 : 사고가 발생하기 전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진단으로 리스크가 높은 부분 조기 식별 및 예방 통제
- Self Digital Audit - 간접적 데이터 활용 → 직접적 디지털 감사 : IT 부서에 요청하지 않고 직접 확보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디지털 증거 확보가 가능하도록 감사 도구 제공
- 데이터 애널리틱스(Data Analytics) 기법을 활용한 상시모니터링을 구축함으로써 부정, 내부통제 취약점과 자금사고 리스크 등을 진단하고 적시에 탐지할 수 있음

V. 주요 행사

딜로이트 Global Boardroom 웨비나

[웹 세미나] 유럽의 지정학적인 변화 양상에 대한 이사회 이사회의 시사점

구분	상세
일시	2023년 2월 17일 (금) 오전 01:00
장소	실시간 온라인 웨비나 (다시보기를 원하시는 경우 문의 부탁드립니다.)
패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임스 G. 스타브리디스 (前 나토(NATO)군 총사령관) 로버트 게이츠 (前 미국 국방부 장관) 위베르 베드린 (前 프랑스 외무장관) 모더레이터: 라나 포루하 (비즈니스 칼럼니스트, Financial Times 부편집장, CNN 글로벌 경제 분석가)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한 해가 지나며 유럽에서 운영하는 기업들이 계속해서 어려움에 맞서고 있음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강화된 무역 블록(trade bloc)과 간섭주의적인 결정을 내릴 의향, 국방비 증가 전망, 미래 에너지 및 생계비 위기, 특정 원자재와 부품의 비용 증가 및 희소성에 이르기까지 이사회는 점점 더 많은 수를 헤쳐 나가야 함 향후 몇 년 간 유럽 지역에서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변화에 앞서고 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사회 멤버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논의할 예정임

신청하기

QR 코드



딜로이트 안전회계법인,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온라인] 연결내부회계관리제도 온라인 교육 (국/영/중문)

구분	상세
일시	상시
장소	온라인 시청
개요	<o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결기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의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내부회계관리제도 당사자의 역할, 책임 제도도입으로 인한 지배기업의 영향 제도도입으로 인한 종속기업의 영향 요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 딜로이트 그룹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임직원 및 감사(위원회)를 위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교육 동영상은 함께 제작하여 공개함 감사수준으로 강화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2023년에 대비하여 기업의 성공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추진된 사항임

동영상 보기

QR 코드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 Contact



김한석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Leader



정현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김학범 파트너

Partner / Risk Advisory



오정훈 파트너

Partner / Audit & Assurance



황현지 Consultant

Consultant / Center for Corporate
Governance

Tel: +82 2 6138 6815
E-mail: krccg@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